

# 清代 醫政史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  
金基郁·朴炫局

## A Study of the History of Medical Administration in *Qing*(清) Dynasty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Kim, Ki-Wook · Park, Hyun-Kuk

Basic summary of the medical administration : Due to *Qing* dynasty being the last of the dynastic era, it revealed overall extreme political traits in politics, economy, phenomenon, and cultural aspects. Few emperors of the early *Qing* dynasty adopted appeasement policy that mitigated ironies to a certain extent and showed growth in various business related fields. Even the medical administration had freshness during that period. United medi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generally formed, chicken pox was effectively prevented, shamanistic treatment was banned, medical journals were compiled by the government, medical relief was more intensely done. However, actions on restoring *Ming* dynasty and against *Qing* dynasty as well as the reform power grew against *Qing* government threatening it. The drastically grown forces from the western region damaged *Qing* dynasty that the governors had to adopt despotic measures i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Social chaos began to arise, economy stagnated and weakened that the medical field also dwindled to the point where it could not be restored to the original point. The era of *Qing* dynasty was the period that had scientific culture at its fast growing pace, but for Chinese medicine, by contrary, due to autocracy and other factors, was faced with barriers in the medical development.

Key Words : History of Medical Administration in *Qing*(清) Dynasty. Smallpox, Cowpox Vaccine, *Wen Zi Yu*(文字獄), *Tai Yi Yuan*(太醫院), *Yu Ying Tang*(育嬰堂), *Pu Ji Tang*(普濟堂).

### I. 序 論

본 논문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형성한 秦始皇으로부터 魏晉南北朝, 劉宋, 隋唐五代, 南宋, 明代까

지 醫政史에 관한 연속적인 연구<sup>1)</sup> 결과이며, 최근의

\* 교신저자 : 김기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54) 770-2664, kkw@dongguk.ac.kr

1) 金基郁, 朴炫局, 朴晶禧, 梁峻.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pp.163-178. 朴炫局, 金基郁, 朴宣柱, 梁峻.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pp.179-195. 金基郁, 朴炫局, 金在哲. 兩宋時期的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pp.65-99. 金基郁, 朴炫局, 鄭城采. 隋唐五代的 醫政史에

연구 자료<sup>2)</sup> 등을 기초한 淸代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그동안 장편의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와 편집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논문으로 중국의 의정사에 관한 연구를 종결지어려 한다.

현재 한의학계는 다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부산한의전문대학원 등의 여러 문제점을 당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溫故知新的 입장에서 살펴 이해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단편적인 아닌 전면적이고 계통적인 정책적 요인이 한의학 발전에 미친 영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하고 연구하여, 한의학 발전의 객관적인 규율에 부합되는 실현 가능한 정책조치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淸代 醫政의 기본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왕조이기에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측면에서 극단적인 전체정치의 특징을 드러냈다. 청대 초기의 일부 황제들은 회유정책을 채택하여 사회적인 모순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고 각종 사업에 발전이 있었다. 의정사업에도 새로움이 있었다. 통일된 의정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고, 천연두를 효과적으로 예방치료 하였고, 邪術을 금지시켰고, 의서를 관찬하였으며, 의약구휼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反淸復明 활동과 혁신세력이 나날이 성장하여 청 정부에 대해 위협을 가하였고, 급속히 발전한 서방세력이 청 정권에 타격을 주어 청대 통치자들이 전체정책을 강화시켰다.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어 경제가 침체되고 쇠퇴하자 의정사업도 점차 쇠퇴해지기 시작하여 이전처럼 회복할 힘이 없어졌다. 청대가 처한 시대는 국제적으로 과학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였으나, 중국의학은 오

히려 절대 전체정치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의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논자는 阿片戰爭 이전까지 淸代의 醫政史에 관하여 정치개요, 의약정책, 의정기구와 제도, 정책적 요인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의정에 대한 평가 등의 방면으로 연구를 개괄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아편전쟁 이전의 정치 개요

이 시기는 淸 世祖 順治 원년(1644)부터 宣宗 道光 20년(1840)까지 196년이다. 1644년에 淸朝의 통치자는 李自成이 북경을 공격한 기회를 틈타 吳三桂와 합세하여 왕도로 진입하여 명 말기에 농민이 봉기한 과실을 탈취하여 만주족이 주체인 전국적인 정권 즉 청 왕조를 건국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계급과 민족의 갈등에 첨예하게 직면하였다.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청 정부는 漢族 지주계급과 관계를 맺어 조세를 감면해 주어 이러한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백여 년의 발전을 통하여 18세기 중엽 乾隆시기에 전성기에 이르렀다. 이후 왕조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본주의 싹이 틈에 따라 청 통치자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1840년에 아편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중국은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 변하였다.

淸朝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군주전제왕조이다. 그 정치체도는 왕도로 들어오기 이전의 제도에 기초하고 또한 명조의 전제주의 체제를 계승하여 만들었다. 청대 초기의 중추적인 기구는 內閣이고 4殿 2閣 즉 中和殿, 保和殿, 文華殿, 武英殿, 文淵閣, 東閣으로 나뉘었다. 雍正 8년(1730)에 軍機處를 설치하여 황제의諭旨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황제의 고문을 담당하고 또한 황제가 교부하는 정무를 의결하고 상소문을 심의 선별하고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고 관원의 임명을 추천하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황제가 중앙에서 지방까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는 乾綱獨斷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p.27-61. 金基郁, 朴炫局. 遼金元の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pp.17-38. 金基郁, 朴炫局, 金正浩. 明代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pp.201-230.  
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p.162-182.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7. pp.675-818. 洪元植, 尹昌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p.394-456.

으로 “一切用人聽言大權，從無旁假”<sup>3)</sup>하게 하였다. 전 제주의의 중앙집권 政體가 최고조에 다다랐다.

중앙행정기구는 명대 제도를 답습하여 吏, 戶, 禮, 兵, 刑, 工 六部를 설치하였다. 태의원은 禮部에 예속되어 있었다. 지방정부는 省, 府, 縣 3등급으로 설치되었다. 군사편성에는 만주족으로 구성된 八旗兵을 주력군으로 삼았고 禁衛兵과 駐防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이외에 漢族으로 구성된 綠營兵을 만들었다. 중앙감찰기관은 都察院이었다. 司法은 중앙 刑部에서 大理寺, 都察院과 회동하여 책임을 맡고 최고 사법심판권은 황제의 수중에 있었다. 과거고시는 縣試, 府考, 院考, 鄉試, 會試, 殿試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이외에 헌납제도를 실행하였다. 청대 醫政 역시 상술한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1840년에 발발한 아편 전쟁은 한편으로는 사회에 변화를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의학이 대량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때문에 의정도 이때부터 다원화와 복잡화되는 국면이 출현하였다.

## 2. 아편전쟁 이전 의약정책

### 1) 邪術을 금지시킴

청대 정부는 明朝에 신선무술을 비판하고 邪術을 단속하여 의학의 영향을 확대한 의정전통을 답습하고 이어서 邪教와 낡은 풍습을 단속 금지시키는 정책을 견지하여 의학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였다. 雍正 원년(1723)에 “……上聞江西襄長催徵累民，民多尚邪教，諭擇度禁革，擇度疏言……‘邪教自當捕治，醫衛星相往往假其術以惑民，雖非邪教，亦當以時嚴懲’，上深嘉之”<sup>4)</sup>하였다. 여기 醫衛星相에서 “醫”는 의사의 이름으로 재화를 사취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으로 진정한 의학이 아니다. 금지하는 바는 邪教이고, 민중이 星相筮 등에 현혹되는 것이다. 雍正 13년(1735) 8월에 “命都統莽鵠立傳諭曰：皇考萬機餘暇，聞外間有爐火修煉之說，聖心深知其非，聊

欲試觀其術，以爲遊戲消閑之具。因將張太虛，王定乾等數人，置於西苑空閒之地，聖心視之，如俳優人等耳。未曾聽其一言，未曾用其一藥。且深知其爲市井無賴之徒。最好造言生事。皇考向朕與和親王面諭者屢矣。今朕將伊等驅出，各回本籍。令莽鵠立傳旨宣諭，伊等平時不安本分，狂妄乖張，惑世欺民，有幹法紀。久爲皇考之所洞鑑。茲從寬驅逐。”<sup>5)</sup> 하였다. 이로써 청대 통치자는 丹藥을 제조하는 일에 대해서도 금기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丹藥을 제조하여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 발발일 틈을 주지 않았다. 이는 의학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雍正시기에 邪術 등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여 이후 황제들은 모두 이를 본받았다. 따라서 邪術로 백성을 현혹시키는 현상이 크게 전환되었다. 嘉慶 7년(1802) 12월에 황제는 “邪教之始由奸民假燒香治病爲名，惑眾斂錢，無知愚民，被其煽誘。”<sup>6)</sup>한다고 諭示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이를 금하게 하였다. 嘉慶 13년(1808) 9월 壬午에 內閣에서 아리길 奉天省에 소수의 사람들이 …… 邪術을 배워 치병하는데 엽총이나 작두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합니다. 刑部를 거쳐 異端法術로 치료하여 죽게 한 예에 의거하는데, 정실에 얽매어 환자가 원하여 치료를 요청하여 실수로 잘못 상해를 입히고 죽게 되었으니 온전을 베풀어 처벌을 면하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東三省 지역에 이러한 사술로 치료하는 풍조가 있으니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의 장군 府尹 등이 수시로 나아가 깨우쳐 줍니다. 의사가 약을 조제하고 예로부터 明文이 있는데 어찌 火器나 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단법술을 배운 자가 다시 있으면 즉시 먼저 조사하여 절대 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규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상술한 사실로 邪教나 과학에 위배되는 邪術에 대해 금지하는 태도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학발전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邪術을 금지하는 동시에 先醫에 대한 제사를 지내

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137.

4) 趙爾巽 著. 清史稿·奏擇度傳.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pp.10312-10313.

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6.

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978.

어 의학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는데 이는 의학발전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청대 초기에는 여전히 구습에 따라 “致祭太醫院景惠殿，歲仲春上甲，遣官行禮。祀三皇：中伏羲，左神農，右黃帝。四配：句芒，風後，祝融，力牧。東廡儲貸季，歧伯，伯高，少師，雷公，伊尹，淳於意，華佗，皇甫謐，巢元方，韋慈藏，錢乙，劉完素，李杲十四人，西則鬼臾區，俞跗，少俞，桐君，馬師皇，扁鵲，張機，王叔和，葛洪，孫思邈，王冰，朱肱，張元素，朱彥修十四人。禮部尚書承祭，兩廡分獻，以太醫院官，禮用三跪九拜三獻。雍正中(1723-1735)，命太醫院官鹹致齋陪祀。”<sup>7)</sup>하였다. 이러한 제사 형식은 결코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 중에 상술한 의가에게 기도하여 평안을 얻으려는 심리를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청대 통치자들은 의학을 믿어 先醫를 회고하였으며 미신인 귀신무술을 거부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백성들의 의학개념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先醫에 대한 제사를 景惠殿에서 거행한 것 이외에 巫闍山과 三皇陵에서도 거행하였다. 雍正 13년(1735) 10월에 사람을 보내 “內閣侍讀學士同濟致祭醫巫闍山 …… 太常寺少卿雅爾呼達，致祭炎帝神農氏等陵。 …… 太僕寺少卿魯國華，致祭黃帝軒轅氏等陵 ……”<sup>8)</sup>하였다. 청대 황제들은 관원을 파견하여 先醫의 제사를 자주 행하였다. 乾隆시기(1786-1795)에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관원을 파견하여 巫闍山에서 세 차례 제사를 지냈고 景惠殿에서는 열여섯 차례 거행하였다. 이로써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건국된 후 의학교육에서 隋唐 이래로 의학 교육에 설치되었던 祝由와 書禁科를 폐지하였다. 이는 청대 통치자들이 의학을 더욱 중시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 2) 유행병에 대한 조치

### (1) 천연두의 예방치료 조치와 조칙

천연두는 위험한 전염병이다. 17세기 후반 이전부터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東華錄』에 따르면 청이 건국되기 이전에는 천연두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조치가 없었고 다만 소극적으로 천연두를 피해 다녔다. 太宗 天聰 원년(1627)과 8년(1634)에 천연두가 유행하자 아이들은 천연두를 피해 멀리 피신시키고 避痘所를 설치하였다. 崇德 원년(1636)과 2년에는 都爾鼻城 일대로 가서 천연두를 피하였고, 이 병에 걸리면 9일 동안은 서로 방문하는 것을 금하도록 규정하였다.

건국 이후에는 천연두 환자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順治 2년(1645) 2월에 영을 내려 성안의 백성 가운데 천연두에 걸린 자는 즉시 몰아내게 하였다. 성 밖 동서남북 40리에 마을을 정하여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俞燮初의 『癸巳存稿』 제9권에 따르면 “국가 초기에 章宗은 천연두를 조사하여 만주인이 천연두에 걸리거나 혹은 성안에 백성들이 천연두에 걸리면 옮기도록 하는 정령을 내렸다”<sup>9)</sup>고 하였다. 이로써 통치자들이 이때 채택한 조치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착상임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남방의 민간인들 사이에는 이미 人痘 접종술이 유행하고 있었다. 康熙 20년(1681)에 聖祖는 內務府 廣儲司郎中 徐定弼에게 痘醫를 구하도록 명하여 朱純嘏, 陳添祥을 찾아 황태자와 황손에게 種痘를 시술하여 모두 나았다. 이 이후 聖祖가 이르길 “나라 초기에 사람들이 천연두를 많이 두려워하였으나 짐이 種痘方을 얻어 여러 자녀와 신하들의 자녀에게 모두 종두를 시술하여 아무런 탈이 없었다. 금번 변방의 49旗와 喀爾 諸藩 모두에 종두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는데 시행한 후에 모두 잘 나았다. 첫 종두를 실시할 때 연로한 사람들은 기괴하게 여겼으나 짐이 뜻을 견지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을 살려내었으니 어찌 우연이란 말인가?”라 하였다. 人痘接種術은 康熙 시대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중국내에서 점차 유행하게 되었고 이어 러시아, 조선, 일본과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전해졌다. 이는 防疫學에 있

7) 趙爾巽 著. 清史稿·禮三志.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p.2544.

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67.

9)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64.

어서 위대한 공헌이다.

乾隆시기에는 인두접종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 통치자 중에서는 격리시켜 감염을 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乾隆 3년(1738) 11월에 “賞故喀爾喀紫薩克多羅郡王多爾濟策爾銀兩。遣官祭奠。諭曰：喀爾喀王多爾濟策爾前稱患過痘疾，今來京又患痘疾溘逝。想伊等並不確知曾否患痘。冒昧前來，甚屬可憫，著行文遍行曉諭蒙古紫薩克等，若有不確知患過痘疾者，著不必來。”<sup>10)</sup>하게 하였다. 乾隆 7년(1742) 정월에 “定外藩蒙古生身人不必來京例。諭曰：…… 舊例未曾出痘蒙古等，俱爲準來京。但恐伊等內有似齊巴格紫蘭，誤行來京染疾者，正復不少。朕心深爲憫側。嗣後如本身未能確知出痘之王公台吉等，俱不必來京……”<sup>11)</sup>하게 하였다. 관직을 보임할 때에 痘疹이 나오지 않은 자는 잠시 등용하지 않았다. 관원들이 전염에 주의한 것 이외에 통치자들은 두진을 앓는 군사의 치료와 간호에 주의를 기울였다. 乾隆 20년(1755) 2월에 陳宏謀와 沿途의 督撫 등에 알리길 “如兵丁中出痘者，俱即留於各該處上緊調治。俟其痊愈時，資送來京，交與兵部送回。其現在業經護送前進者，亦即一體留養。毋令力疾行走。如有因疾身故者，亦加恩料理遺骸，令歸故土，以副朕體恤士卒至意。”<sup>12)</sup>라 하였다.

인두접종법은 17세기에 국내에서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전해졌으며 세계 각국의 연구와 주목을 받았다. 영국인 Jenner가 1796년에 발명한 牛痘접종법은 嘉慶 10년(1805)에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으며 당시 廣州의 “十三行”상인인 鄭崇謙 등이 처음으로 局布種牛痘를 설립하였다. 머지 않아 북경, 상해, 천진 등지에도 잇달아 牛痘局이 설립되었다. 이후에 우두접종법은 인두접종법을 점차 대신하게 되었다. 청 정부는 천연두의 예방을 비교적 중시하였고 또한 인두접종과 우두접종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기 때문에 천연두의 전염이 청대에는 대

체로 잘 통제되었다.

## (2) 역병과 대책

청대에는 천연두 이외에 다른 유행병도 창궐하였다. 1644년 청대가 세워질 때부터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하기까지 200여년 동안 기록에 나타난 역병은 적어도 79차례나 발생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清史稿』의 기록에 근거하여 아편전쟁 이전까지 역병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1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767.

1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473.

1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644.

論號	중국 기년	서기	역병발생상황
世祖	順治 1년	1644	懷來, 龍門, 宣化에 大疫
	순치 9년	1652	萬全에 疫病
聖祖	康熙 1년	1662	欽州, 餘姚에 대역
	강희 7년	1668	內邱에 대역
	강희 9년	1670	靈州에 대역
	강희 12년	1673	新城에 대역
	강희 13년	1674	疫癘가 盛行
	강희 16년	1677	上海, 靑浦, 商州에 대역
	강희 19년	1680	蘇州에 대역, 溧水州에 疫病
	강희 20년	1681	晉寧, 曲陽에 대역
	강희 21년	1682	榆次에 대역
	강희 22년	1683	宣城에 대역
	강희 31년	1692	鄜陽, 房縣, 廣宗, 富平, 同官, 陝西, 鳳陽, 靜寧에 대역
	강희 32년	1693	德平에 대역
	강희 33년	1694	湖州, 桐鄉, 瓊州에 대역
	강희 36년	1697	嘉定, 介休, 靑浦, 寧州에 疫病
	강희 37년	1689	壽光, 昌樂, 浮山, 隰州에 疫病
	강희 41년	1702	連州에 疫病
	강희 42년	1703	瓊州, 靈州, 景州, 曲阜, 東昌, 巨野, 文登에 대역
	강희 43년	1704	南樂, 荷澤, 昌樂에 疫病. 河間, 獻縣, 章邱, 東昌, 靑州, 羌州, 寧海, 灌縣에 대역. 福山에 瘟疫이 발생
	강희 45년	1706	房縣, 浦圻에 대역, 崇陽에 疫病
	강희 46년	1707	平樂, 永安州에 疫病, 房縣, 公安, 沔陽에 대역
	강희 47년	1708	公安, 沁源, 靈州, 武寧, 浦圻, 涼州에 대역
	강희 48년	1709	胡州, 桐鄉, 象山, 高淳, 太湖, 潛山, 南陵, 銅山, 無爲, 東流, 當塗, 鞏州, 江南에 대역, 溧水, 靑州에 疫病
	강희 49년	1710	湖州에 疫病
	강희 52년	1713	化州, 陽江, 廣寧에 대역
	강희 53년	1714	陽江에 대역
	강희 56년	1717	天台에 疫病
	강희 60년	1721	富平, 山陽에 疫病
	강희 61년	1722	桐鄉, 嘉興에 疫病
世宗	雍正 1년	1723	平鄉에 대역
	옹정 2년	1724	陽信에 대역
	옹정 4년	1726	上元, 曲沃, 大浦, 獻縣에 疫病
	옹정 5년	1727	揭揭, 海陽, 澄海, 黃岡에 대역; 漢陽, 鐘祥, 樞明에 疫病
	옹정 6년	1728	武進, 鎮洋, 崇陽, 浦圻, 荊門, 山海衛, 鄆西에 대역; 常山, 太原, 井陘, 沁源, 甘泉, 獲鹿, 枝江, 巢縣에 疫病
	옹정 11년	1733	鎮洋, 上海, 寶山에 대역; 昆山에 疫病

高宗	乾隆 7년	1742	無爲에 역병
	건륭 10년	1745	襄陽에 대역
	건륭 12년	1747	蒙陰에 대역
	건륭 13년	1748	泰山, 曲阜, 膠州, 東昌, 福山, 東平에 대역
	건륭 14년	1749	青浦, 武淮에 대역, 永豐, 溧水에 역병
	건륭 21년	1756	湖州, 蘇州, 類縣, 崇明, 通州, 鳳陽에 대역
	건륭 22년	1757	桐鄉, 陵川에 대역
	건륭 25년	1760	平定, 嘉善, 靖遠에 대역
	건륭 32년	1767	嘉善에 대역
	건륭 35년	1770	蘭州에 대역
	건륭 36년	1771	值에 대역이 발생하여 局을 설치하여 약을 나누어 줌 ……
	건륭 41년	1775	武強에 대역
	건륭 48년	1783	瑞安에 대역
	건륭 50년	1785	青浦에 대역
	건륭 51년	1786	泰州, 通州, 合肥, 贛榆, 武淮, 蘇州, 日照, 範縣, 莘縣, 荅州, 東光에 대역, 昌樂에 역병
건륭 55년	1790	鎮番, 雲夢에 역병	
건륭 57년	1792	黃梅에 대역	
건륭 58년	1793	嘉善에 대역	
건륭 60년	1795	瑞安에 대역	
仁宗	嘉慶 2년	1797	寧波에 대역
	가경 3년	1798	臨邑에 대역
	가경 5년	1800	宜平에 대역
	가경 10년	1805	東光, 永嘉에 대역
	가경 16년	1811	永昌에 대역
	가경 19년	1814	枝江에 대역
	가경 20년	1815	泰州, 東阿, 宜州에 역병; 武城에 대역
	가경 21년	1816	內邱에 대역
	가경 23년	1818	諸城에 대역
	가경 24년	1819	恩施에 대역
가경 25년	1820	桐鄉, 太平, 青浦, 樂青, 嘉興에 대역; 永嘉에 大瘟疫 유행	
宣宗	德光 1년	1821	任邱, 冠縣, 武城, 範縣, 登州府屬, 東光, 元氏, 新樂, 通州, 濟南, 東阿, 武定, 滕縣, 濟寧州, 東亭, 濰州, 內邱, 唐山, 蠡縣, 望都, 南宮, 曲陽, 武強, 平鄉, 日照, 沂水에 대역; 巨野에 역병; 青縣에 時疫이 크게 발생; 清苑, 定州에 瘟疫이 유행.
	덕광 2년	1822	無極, 南樂, 臨榆, 宣城, 安定에 대역; 永嘉에 역병
	덕광 3년	1823	泰州, 臨榆에 대역
	덕광 4년	1824	平穀, 南樂, 清苑에 대역
	덕광 6년	1826	治化에 역병
	덕광 7년	1827	武城에 역병
	덕광 11년	1831	永嘉에 역병
	덕광 12년	1832	武昌, 鹹寧, 潛江, 黃陂, 漢陽, 宜都, 石首, 崇陽, 松滋, 應城, 黃梅, 公安에 대역; 臨利, 蓬萊에 역병
	덕광 13년	1833	諸城, 乘縣, 宣城, 永嘉, 日照, 定海廳에 대역
宣宗	덕광 14년	1834	宜平, 高淳에 대역
	덕광 15년	1835	範縣에 대역
	덕광 16년	1836	青州에 역병, 海陽, 卽熙에 대역
	덕광 19년	1839	雲夢에 대역

주: 1840년 이후의 역병은 통계를 내지 않았다.

【표 1】 청대(1840년 전까지) 역병 발생상황 일람표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청대는 유행병이 창궐하였다. 초기인 順治, 康熙, 乾隆 등의 황제들은 회유정책을 펼쳐 의약을 수단으로 삼아 유행병에 대해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하였다. 順治 11년(1654)에 景山 동문밖에 약방을 지어 역병이 유행할 때 태의원관이 약물을 배포하였다. 康熙 13년에서 16년(1674-1677)에 “疫癘盛行, 廣施藥餌, 全活無算”<sup>13)</sup>하였다. 康熙 20년(1681) 五城에 藥廠 15곳을 설치하여 백성을 무료로 치료하였다. 康熙 31년(1692) 10월 己卯에 “秦省北歲凶荒, 加以疾疫, 多方賑濟, 未蘇積困, 所有明年地丁稅糧, 悉予蠲免. 從前逋欠, 一概豁免, 用稱朕子惠元至意”<sup>14)</sup>할 것을 명하였다. 康熙 47년(1708)에 황제는 “值歲饑, 疫甚, 周歷村墟, 詢民疾苦, 請賑貸, 全活甚衆.”<sup>15)</sup> 하였다. 康熙황제 재위 61년 동안 모두 28차례나 유행병이 발생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乾隆시기에도 역병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乾隆 원년(1736) 3월에 總理事務大臣에게 “聞黔省地方, 春夏之交, 多有瘴氣. 今當用兵之時, 朕心深爲軫念. 著將內製平安丸·太乙紫金錠藥, 多多豫備……分給各路軍營, 以備一時之用, 毋得稽遲.”<sup>16)</sup>할 것을 지시하였다. 乾隆 3년(1738) 4월에 廣東 督撫인 鄂彌達은 4개 省 주위에 瘴病에 걸려 죽은 관원을 본격적으로 돌려보낸 사례를 들어 은전을 베풀도록 주청하였다. 황제는 “朕意與其加恩拯恤於身後, 何如設法保全於生前”<sup>17)</sup>이라 하였다. 乾隆 36년(1771)에 “值大疫, 設局施藥施座…….”<sup>18)</sup> 하였다. 乾隆황제 재위 60년 동안에 유행병이 19차례 발생하였다. 이에 대처한 조치가 상술한 내용에 그치지 않는 것만 그러나

유행병이 창궐하여 만연한 것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청조를 통틀어 유행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매우 부실하였다. 특히 乾隆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점차 느슨해져 백성들의 건강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 3) 정부가 의서의 편찬을 주관

청대 정부는 의서의 정리와 대형 類書·叢書의 편찬 작업을 중시하였다. 康熙 24년(1685)에 “醫官博採醫林載籍, 勒成一書.”<sup>19)</sup>할 것을 명하였다. 정부의 지원 아래 陣夢雷, 蔣廷錫이 편찬한 대형 類書인 『古今圖書集成·醫部全書』가 세상에 나왔다. 乾隆 연간에 纂修醫書館을 세워 의서편찬을 주관하였다. 乾隆 4년(1739) 12월 甲申에 大學士 鄂爾泰가 “纂修醫書館應開於太醫院衙門. 其總修, 纂修, 收掌各官, 令該院揀派. 在館官役, 月費, 工食應照八旗志書館例支領. 得旨, 醫書館與修書各館不同, 該館纂修等官公費, 著照修書各館例減半支給, 餘依議.”<sup>20)</sup>할 것을 주청하였다. 乾隆 8년(1743) 4월에 “纂修『醫宗金鑒』書成. 總修以下官議敘有差.”<sup>21)</sup>하게 하였다. 乾隆 9년(1744) 11월 辛巳에 “諭: 『醫宗金鑒』一書告成, 和親王大學士鄂爾泰暨本館經理, 總修, 提調, 纂修, 校閱, 收掌, 謄錄等官並該院官員人等, 著各賞給一部. 吳謙, 亦賞給一部. 再各直省布政司, 俱著發給一部, 聽其翻刻頒行.”<sup>22)</sup>하라고 지시하였다. 太醫院判인 吳謙이 총지휘하여 수찬한 『醫宗金鑒』은 乾隆시기에 의학교과서로 삼은 이후부터 청말까지 160여 년 동안 사용되어왔다. 이는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주관하여 의서를 편찬하는 정책적인 시범을 보였고 개인이 편저한 보급성 의서가 잇달아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李樞의 『醫學入門』 등은 의학 보급에 큰 영향을 끼쳤다.

13) 趙爾巽 著. 清史稿·崔華傳.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p.12993.

14) 趙爾巽 著. 清史稿·聖祖二紀.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p.236.

15) 趙爾巽 著. 清史稿·陳鵬年傳.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p.10094.

1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82.

1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628.

18) 趙爾巽 著. 清史稿·沈善富傳.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p.11040.

19) 趙爾巽 著. 清史稿·聖祖二紀.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p.217.

2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992.

2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774.

2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145.



#### 4) 의약형벌과 감옥의 생

##### (1) 인삼 채취에 관한 형벌

청은 백두산 일대에서 발원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건강방면에 있어서 백두산의 토종 약재인 인삼 등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따라서 청 정부는 인삼에 대한 보호를 매우 중시하였다. 청조의 기반을 닦은 태조 누르하치는 몰래 인삼을 채취할 경우 엄격히 조사하여 다스릴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清文獻通考』에 順治, 康熙, 雍正, 乾隆시기 몰래 인삼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형틀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삼을 몰래 채취하면 刑部로 보내 조사하여 다스렸다. 康熙 57년(1718)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7월 왕도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將軍 府尹과 함께 조사토록 하였다. 雍正 2년(1724) 4월 兵部左侍郎 舒赫德이 황제에게 올린 여덟 항목 중 제 1조가 “重治偷挖人參, 以清積弊. …… 產參之地. 從前擊獲偷挖人等, 未及十兩者, 罪止枷號鞭責. 此輩止趨重利, 情甘犯法. 嗣後除將會同百人以上, 所得人參過五百兩者, 照例擬絞. 不足百人, 所得人參不足五百兩者, 亦照例杖徒外, 其一二人私挖人參, 不足十兩者, 分別初犯, 再犯, 三犯, 治罪 ……”<sup>23)</sup> 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 乾隆시기에 표를 발급하여 인삼을 캐어 납세하는 관리방법이 일정한 효과를 얻었다. 乾隆 7년(1742) 12월 辛卯에 戶部에서 “奉天將軍額爾圖等奏稱, 每年放票創參, 俱派員嚴查, 並設卡座, 勢難偷越私. 從前侍郎留保, 所稱奉天設行店權稅, 以防透漏. 雖似可行, 但領票人夫多屬奉天, 船廠, 寧古塔三處土著旗民. 所得參, 或在寧古塔賣充盤費, 或隨護牌至奉天售賣. 若奉天設行店權稅, 不無土豪奸商, 紛擾滋弊. 應請別籌納稅之法. 查偷採參劾, 自應嚴密稽察, 以清山禁. 倘有私帶米糧接濟者, 查出一並治罪. 至官商資本參劾, 並人夫餘剩參劾, 既不便於奉天設行店權稅, 又不便令土著人夫一並入關納稅. 其收納稅銀必有一定之所, 始免透漏. 今官參餘參, 俱於寧古塔地方會核, 應即令該副都統, 照山海關權稅之例查明收納, 令該商解繳監督, 仍知照奉天將軍奏聞, 並知會戶部及山海關監督查覈. 其官商及人夫進關貿易參劾, 俱給印

票封, 交本人收執. 移交山海關監督. 已稅之參, 免其再稅. 如影射夾帶, 較原報之數多出者, 將參入官, 照例治罪. 並將查驗不實之員, 參處, 從之.”<sup>24)</sup>라 건의하였다. 乾隆시기에 몰래 인삼 캐는 것을 금지하는 방면에 있어서 상술한 몇 가지 항목의 관리 조례 이외에 직접 파병하여 인삼이 생산되는 깊은 지역에서 몰래 인삼을 캐는 자를 수색하였다. 乾隆 8년(1743) 3월 辛未에 議政대신과 碩裕 친왕 廣祿 등이 제의하고 寧古塔의 장군 鄂彌達이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다. 烏蘇裏 등지에서 인삼이 산출되는데 몰래 인삼을 채취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산에 천막을 치거나 굴을 파서 겨울을 보내다 여름이 되면 농사를 짓거나 산에 들어가 몰래 인삼을 채취한다. 지역이 광활하여 그들이 머무르는 시기가 오래될수록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寧古塔據派幹員, 帶兵三百名, 於四月初旬, 在烏蘇裏等處, 擇要隘設卡. …… 遇有私採匪徒, 一一拘拏. …… 近年採參之人, 多誣領官票, 不行回繳等語, 并請敕該將軍等, 遇放票之年, 須選才幹員弁, 上緊查拏, 并飭總商必擇十分可信者予票務絕誣領之弊. 從之.”<sup>25)</sup>할 것을 청하였다. 요컨대 청대 順治에서 乾隆 연간에 인삼을 몰래 채취하는 형틀에 관한 규정이 많았고, 이는 야생인삼 등의 약재를 보호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 (2) 감옥 의약

###### ① 獄醫 파견

청대 獄醫는 모두 태의원에서 파견하였고 順治 8년(1651)에 刑部에서 의술이 뛰어난 冠帶의사를 파견하여 매달 약값, 은, 곡식을 지급하였다. 6년을 복무하면 다시 태의원으로 돌아가 吏目으로 승진하였다. 順治 11년(1654)에 冠帶의사 한 명을 고정 배치하였으나 후에 폐지하였다. 康熙 23년(1684)에 또한 刑部醫士 한 명을 증설하였으나 후에 다시 철회하였다. 乾隆 29년(1764)에 寧古塔 지역에 감옥을 설치하고

2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700.

2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758.

2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060.

의관 한 명을 파견하였다. 嘉慶 10년(1805)에 內外 刑獄에 의사 두 명을 선발하여 두었다. 청대에는 감옥에 항상 獄醫를 파견하여 수감된 죄인을 위해 치료하였다.

② 木籠刑을 금함

『清文獻通考』의 기재에 의하면 康熙 3년(1664) 禦使 姚延啓가 아뢰길, 江南, 浙江 등의 省에 옥졸의 가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木籠을 만들어 상하 여러 층으로 나누고 그 속에 죄인을 넣어 굴시킬 수 없게 하였다. 한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疫癘가 발생하는 폐단이 많다. 이에 淸教部는 이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③ 죄인이 병으로 죽으면 獄官을 처벌하는 규정

康熙 9년(1670)에 감옥에서 3명 이상이 죽으면 刑部의 承向官과 이를 관리하는 상사는 파면되거나 벌을 받는 등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였다(『清文獻通考』 권 196, 刑2). 雍正 5년(1727)에 죄인이 病死하면 옥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刑部에서 왕의 명을 받들어 옥에 갇힌 죄인이 죽으면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감옥을 관리하는 옥관은 예에 따라 처벌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후임자가 죽음에 대한 죄를 받으며 軍流와 杖徒 이하는 3등으로 나누고 죄인의 죽은 숫자에 따라 처벌한다(『清文獻通考』 권197, 刑3)고 공표하였다.

④ 죄인에 대한 의약

청대에 죄수에 대한 의약정책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乾隆 3년(1738) 2월 壬子에 滇省의 옥에 갇힌 죄수의 의복과 藥餌에 대해 일반 죄수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것에 준하도록 명하였다. 甘肅에 명하여 죄인의 의복, 약, 관 등은 매년 자체에서 조달하여 지출하도록 하였다(『清實錄』 권63). 乾隆 8년(1743) 5월에 “…… 著刑部堂官, 於在京徒杖以下輕罪, 查明情節, 或應釋放, 或應減等, 即速分別, 請旨完結. 其重罪人犯, …… 身繫囹圄, 實堪憐憫. 著該部添蓋席棚, 給與冰湯藥餌, 無致病.”<sup>26)</sup>하도록 명하였다. 乾隆 9년(1744) 12월 丙辰에 “刑部議覆, 協理山東道禦史胡蛟齡奏稱, 各

2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812.

省散給獄囚衣糧有名無實, 請敕下督撫, 嚴飭所屬留心查覈, 毋使吏役人等侵蝕中飽. 至有病監犯, 務令刻速醫治, 分別取保散禁. …… 所奏通行, 從之.”<sup>27)</sup>하였다. 죄인의 의약방면에 있어서 嘉慶시기에 폭행으로 사망한 죄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嘉慶 17년(1812) 6월 辛丑에 內閣 禦使 嵩安이 “…… 監犯患病及監斃人犯, 請交查監禦史稽覆一摺 …… 監犯患病, 其病勢如何危篤, 方咨明禦史查驗. 至囚病身故, 即著該禦史率領坊官會同刑部司員相驗, 如有情弊, 據實查參 …… 儻有非法拷打, 及將不應刑訊之人濫刑致斃, 并禁卒有凌虐罪囚情事, 即據實嚴參窮辦. 其由各衙門解送之案, 將人犯是否患病及曾否刑訊受傷之處, 於文內聲明. 若有刑傷及病勢沈重者, 刑部立即移咨禦史, 亦於一日內赴部查驗立案, 俾有稽考. 從之”<sup>28)</sup> 할 것을 보고하였다.

상술한 규정 이외에 雍正 23년(1735) 11월에 독약 살인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清實錄』 권6). 嘉慶 13년(1808)에 교외 지역에 점포를 차려 약을 판매하거나 기타 찻집과 장사를 못하도록 규정하였다(『清實錄』 권196). 이러한 규정은 의학발전예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清代 의약刑律과 감옥의 의약규정은 唐宋明에 비해 비교적 간략하였다.

5) 의약과 관련된 3가지 금령

乾隆시기 각 분야는 융성하게 발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의 의정사업도 다른 시기에 비해 완비되었다. 의약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즉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주요한 금령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의사를 가장한 절취를 엄금하였다. 乾隆 4년(1739) 10월에 “諭軍機大臣等, 朕聞河南陳許一帶 …… 專籍婦女假扮醫巫, 入人家室, 盜物潛逃, 無由捕緝. 此等匪類 …… 若於冬月歲暮之時, 密行伺察, 方可弋獲. 應令豫撫密咨東省, 傷令誘同知, 預行確訪, 及時搜捕, 以清盜藪 …… ”<sup>29)</sup>하였다.

2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162.

2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564.

2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

둘째 毒藥酒를 제조판매 금지하였다. 乾隆 13년(1748) 4월에 “諭軍機大臣等, 據周學健奏稱, 東省昌樂等縣, 因地方歉收, 有造賣燒酒之家, 擇辛辣有毒藥草, 磨麪作麵, 名曰神麵, 以之造酒, 米可少而水可多. 氣味香辣, 其價倍賤, 最易動人. 此種藥酒, 多餘食物之性相反, 民間買飲, 每致斃命. 江省餘山東接壤, 竟有販賣來南者, 已傷禁民間, 毋得沽飲等語. 此等造賣毒酒, 以賤價哄誘愚民, 暗傷人命, 爲害甚大. 東省有此, 並沿及他處. 地方官何以全無覺察. 可傳諭阿裏袞, 令其留心訪查, 務將造賣之人, 嚴拏治罪, 永行禁止, 以絕根株, 毋得疏忽貽害.”<sup>30</sup>하게 하였다.

셋째 독화살을 금지시켰다. 雍正시기에 남방의苗族이 독화살을 만들어 관병을 쏘아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일제히 금지시켰다. 乾隆시기에도 이를 금지시켜 확산되지 못하게 하였다. 乾隆 13년(1748) 12월에 “貴州提督丁士傑奏: 護川陝總督傅爾丹奏調貴州長寨營, 定番州二處土兵, 查二處皆山崇箐密, 從前恃險猖獗, 貳定後禁止弓弩器械, 悉行追繳, 俾安靜爲農. 今任以戰攻, 決無實用. 即或有用, 而苗性犬羊, 適啟弄兵之弊. 至雲藥箭狠毒, 可以禦敵. 查以前藥箭有二種: 一名蛇藥, 一名野鹿藥. 人若攬之, 即難解救. 是以久經嚴禁……而嚴禁一開, 恐苗民藉以滋事.”<sup>31</sup>라 하였다. 황제는 丁士傑의 주청을 허락하여 묘족의 독화살에 대해 계속 금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약의 이점을 빌어 사취하고 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에 타격을 주어 의정 질서를 지키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 3. 의정기구와 제도의 황폐화

#### 1) 의정관리의 성쇠

청대 의정관리의 주요제도는 대체로 명대 제도를 답습하였고 중앙의정 관리기관도 여전히 태의원이었다. “太醫院院使, 漢使一人, 左右院判漢人各一人, 掌醫之政令, 率其屬以供醫事. 禦醫十有五人, 吏目三十

人(八品十五人, 九品十五人), 醫士四十人, 醫員三人…… 又有效力醫生無定員, 掌炮制之法, 院使考其術而進退之.”<sup>32</sup>시켰다. 이는 태의원의 일반조직에 대한 기록이며 실제로 각 단계별로 변동이 있었다. 의관의 품계는 일반적으로 院使는 정5품, 左右院判은 정6품, 禦醫는 정8품…… 이었다. 宣統 원년 이후에 비교적 큰 변동이 있어 의관의 품계가 1등급씩 높아졌다. 태의원은 의정 관리 이외에 황제의 평상시와 순찰시의 보건을 책임지고 여러 王府, 公主, 文武內大臣에게 의사를 파견하며 진료하고, 군대와 감옥에 의관을 파견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태의원은 禮部에 소속되어 있었다.

태의원 이외에 청대에 禦藥房을 설치하여 약물의 구매, 저장, 제조를 담당하였다. 동, 서 2곳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西藥房은 院使, 院判, 禦醫, 吏目 등이 짝을 나누어 돌아가며 근무하였다. 東藥은 禦醫, 醫士가 돌아가며 근무하였다. 어약방에서 돌아가며 근무하는 醫官은 제왕의 약을 달이는 것을 책임진다. 어약방에는 生藥庫를 설치하여 각 성에서 공급한 약물을 모두 여기에 보관하였다. 어약방에는 管理대신(7品銜)을 두어 주된 사무를 보았고 겸하여 司員, 內管領, 庫掌 등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하였다.

청대 의정관리 제도의 방면에서 명대의 남·북 兩院制를 폐지하고 의정 관리를 중앙집권화 시켰다. 명대에 궁정의 太子, 宮妃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한 典藥局, 安樂堂 등의 의약기구를 청대 궁정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청대 초기에 어약방은 태의원에 소속되어 있었고 군대, 감옥에 파견하는 의관들도 태의원에서 파견, 심사, 승급시켰다. 상술한 제도는 의정 관리의 협조와 발전에 상당히 작용하여 청대 초기 의정관리가 비교적 성공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협조적인 관리제도가 시종 여일하게 집행되지 못하여 부단히 완비시키는 조치가 부족하였고 또한 자주 변동되었다.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적극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대의 의정이 점차 문란해지게 되었다. 이는 기구의 예측방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변동이 특히 두드러졌다. 順治 16년(1659)에 어약방의 모

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962.

3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996.

3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278.

32) 高宗 編纂. 清朝通典. 臺北. 新興書局. 1965. p.2185.

든 사무가 태의원의 관리로 귀속시키고 예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生藥庫를 예부에서 관리하도록 바꾸어 필요한 약재는 먼저 명단을 기록하여 예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 생약고에 통지하여 구입하였다. 이는 태의원에서 통괄하는 기능을 약화시켰다. 康熙 10년(1671)에 禦藥房이 태의원의 관리에 속하지 않고 總管太監, 管庫首領 등을 두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태의원과 어약방을 각자 독립시켜 이들 사이에 협조와 연계를 단절시켰다. 道光 이후에 각 성에서는 약재를 예에 따라 공급하였고 또한 모두 內務府에서 직접 관장하였고 기타 생산되는 약재는 모두 대금을 지불하여 내무부에서 수시로 구입하였다. 이와 같이 생약고는 거의 형식상으로만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sup>33)</sup>.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청대에 의정관리가 자주 변동되어 혼란스러웠던 일면을 볼 수 있다.

## 2) 의학교육의 문제점

청대의 중앙의학교육에는 전문기구가 없었다. 다만 태의원 속에 敎習廳을 설치하여 禦醫 가운데 학식이 깊은 2-3명을 선발하여 東藥房에서 禦藥房의 太監이 가르쳤으며 이를 內敎習이라 하였다. 이 이외에 여의 2-3명을 선발하여 의관의 자제를 가르쳐 이를 外敎習이라고 불렀다. 태의원의 의학생 출신은 주로 의관의 자제들이었다. 배우는 과목은 주로 『內經』, 『傷寒』, 『金匱』, 『本草綱目』 등 경전과 각 전문 학과와 관련된 의서였다. 건륭 14년(1749)에 吳謙 등이 편성한 『醫宗金鑑』을 의학교과서로 삼아 청대 말기까지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배우고 禮部의 고시를 통하여 합격하면 醫士라 불렀고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공부하여 다음을 기다렸다. 태의원의 의학생 숫자는 비교적 적었고 각 시기마다 달랐는데 보통 40명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학생은 학습 이외에 필사와 약물을 수취하고 제조하는 일을 맡았다.

청대의 의학 분과는 4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청대 초기에 의학은 11개과, 즉 大方脈, 傷寒, 婦人, 小方

脈, 痘疹, 瘡瘍, 眼科, 口齒, 咽喉, 針灸, 正骨科로 나누었다. 痘疹이 전문적인 하나의 과로 된 것이 특징이다. 嘉慶 2년(1797)에 小方脈과 痘疹, 口齒와 咽喉를 합병하여 모두 9개의 과가 되었다. 가경 6년(1801)에 正骨科를 上駟院에 귀속시켜 蒙古의생이 겸임하여 태의원에는 8개 과만 남게 되었다. 道光 2년(1822)에 태의원에서 또한 침구과를 폐지시켜 7개 과만이 남게 되었다. 아편전쟁 이후에 의학은 더욱 무질서해지게 되었다. 同治 5년(1866)에는 단지 大方脈, 小方脈, 外科, 眼科, 口齒, 咽喉 등 5개 과였고 각과의 고시제도 충실하지 못했다.

청대에 지방에도 의학을 설치하여 府에는 正科 1명(종9품)을 두었고 州에는 典科를 설치하였으며 縣에는 訓科를 설치하여 모두 醫士가 담당하였다<sup>34)</sup>. 청대 지방의관은 禮部에서 선발, 추천하여 태의원에 이를 통보하고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吏部에 보고하고 보존하였다. 府, 州, 縣에서 의학을 배우는 사람 중에 기술이 뛰어난 자가 발견되면 巡撫에 보고하고 여비를 지급하여 태의원에 와서 고시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吏目, 醫士 등에 임용되었다. 나이가 많거나 성적이 보통인 자는 지방에 머물면서 활동하였다. 요컨대 청대의 의학교육은 대체로 명대의 제도를 답습하였지만 명대의 지방의학교육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었다. 아편전쟁 이후 국력이 더욱 쇠퇴해지고 서방의학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태의원에선 또한 경비가 부족하여 쇠락해져가는 기미가 더욱 뚜렷하였다.

## 3) 구휼 사업의 성쇠

청대 의약구휼 사업은 왕성한 것에서 쇠퇴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乾隆 이전에는 이러한 사업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嘉慶 이래로 날로 하강하였고 아편전쟁 이후에는 더욱 쇠락하였다. 구휼사업의 흥망성쇠는 구휼조직의 흥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3)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74.

3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74(大清會要 권18 吏部·官制에서 인용).

(1) 育嬰堂과 普濟堂

康熙 원년(1662) 북경의 廣渠門 안에 있는 夕照寺 서쪽에 育嬰堂이 설치되어 棄兒를 거두어 살렸다. 雍正 2년(1724) 육영당에 “功深保赤”이란 편액과 돈을 하사하고 각지에 이를 본받아 실행토록 하였다<sup>35)</sup>. 같은 해 聖祖는 북경의 廣寧門 밖에 普濟堂이 있으니 늙고 병들어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물게 하라고 하였다. 또한 성조는 편액을 하사하고 비석을 세워 그 뜻을 기렸다. 雍正 13년(1735) 12월에 高宗은 “諭總理事務五大臣, 京城有普濟堂二處, 育嬰堂一處, 收養無依之窮民及拋棄之嬰孩, 由來已久. 其經管之人, 實心行善, 有存孤恤老之風. 從前皇考曾兩賜帑金, 並賜溫綸以旌義舉. 今朕即位, 廣沛恩膏, 而輦轂之下, 樂善良民, 敦行不怠, 朕心嘉悅. 三處各賜銀五百兩, 以助其贍養之費. 著內務府卽行給發, 並將朕旨宣諭知之.”<sup>36)</sup> 하였다. 乾隆 원년(1736) 2월에 工部左侍郎 王鈞이 황제에게 “前於豐潤, 霸州營成稻田一百頃有奇, 請交直隸總督李衛招佃納糧, 或爲書院士子膏火之資, 或充普濟堂, 育嬰堂等用. 得旨, 著照王鈞所請……酌量辦理.”<sup>37)</sup>할 것을 주청하였다. 乾隆 8년(1743) 7월에 軍機大臣 등이 논의하여 禦使 王興吾가 수도 밖에서 온 유민들을 구휼할 것을 주청하자 황제가 명하여 “老病羸弱無依者, 卽收普濟堂, 養濟院留養.”<sup>38)</sup>하게 하였다. 乾隆 23년(1757) 9월에 河南의 巡撫인 胡寶瑋이 주청하길 “豫省被災州縣, 蒙格外蠲賑賴施, 災民已有起色……臣等酌義……其老弱疾病者, 九, 十月天氣尚和, 仍照前分別辦理. 自十一月至正月, 責令地方官收養, 酌量煮賑其普濟堂, 養濟院. 尚有餘房卽行棲止. 不敷者, 搭蓋席棚. 並擇公正裏老, 任關糧煮賑等事.”<sup>39)</sup>라 하였다. 상술한 사실로 康熙와 擁

正시기에 창설된 普濟堂과 育嬰堂은 乾隆시기에 더욱 발전하고 공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 청대 의약구휼 사업은 이 시기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이러한 사업들은 점차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 嘉慶 4년(1799)에 정부가 이러한 기구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禦使를 파견하여 감시하고 조사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서의 폐단은 사실상 두절시키지 못했고 또한 갈수록 심각해졌다. 道光 3년(1823) 정부는 廣西省의 育嬰堂의 경비를 道庫鹽羨下에서 지출하도록 허가하여 년 1,584량을 배정하고 연말에 府에 보고하여 결산하도록 하였다. 道光 이후 普濟堂과 育嬰堂의 업무는 날로 무질서해졌다.

(2) 養濟院

양제원은 康熙, 雍正시대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雍正 원년(1723)에 각처 양제원에 있는 돌보는 사람이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불구자에 대해 관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하명하였다. 乾隆 원년(1736) 4월에 “命歸化城設立養濟院, 諭: 各省郡縣州邑, 皆有養濟院, 以收養貧民. 此卽古帝王哀矜寡獨之意. 朕聞歸化地方, 接壤邊關, 人煙湊集, 其中多用疲癯殘疾之人……查彼地舊有把總官房三十餘間, 可以改爲收養貧民之所……”<sup>41)</sup>하게 유시를 내렸다. 乾隆 2년(1737) 3월에 “……軍民年七十以上者, 許一丁侍養, 免其雜派差役……”<sup>42)</sup>하도록 하였다. 3월 總理事務 王大臣에게 재차 지시하길 “直省設立養濟院, 收養孤貧. 月給銀米, 計口授食. 俾官主其事, 吏胥毋得中飽, 法至周也. 但聞州縣, ……試思鰥寡孤獨, 疾病廢之眾, 既無營生, 又非乞丐, 若年歲逢闕, 一月無糧, 其何以存活. 著該部通行直省督撫, 嗣後孤貧口糧, 皆計日給發. 小建可扣, 閏月糧應加, 務使均沾實惠, 以副朕勤求民隱之至意.”<sup>43)</sup>하게 하였다. 乾隆 황제는 조칙을 내려

35)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74(日下舊聞考 권56 成市에서 인용).

3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31.

3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64.

3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845.

3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5321.

40)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75(續清朝文獻通考 권83 國用에서 인용).

4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05.

4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4.

각 省에 養濟院을 설립하여 충분한 식량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또한 이러한 조직이 府·州·縣으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乾隆 4년(1739) 5월 丙午에 “各府, 州, 縣設立養濟院. 原以收養鰥寡孤獨疲癯殘疾之窮民. 近聞山西陝西一帶多有老病殘廢之人在途行乞行族見之惻然, 脫思各處既有養濟院, 若有司實力奉行, 何至小民之困苦無依者. 饑寒難支, 乞食於道. 山陝一路如此, 則他省與此相類者不少矣. 著各省督撫, 各飭屬所屬州, 縣官, 體國家設立養濟院之意, 與朕哀此窮獨之心. 實力奉行, 毋得視為具文故事. 該督撫亦當時時留心訪察之”<sup>43)</sup>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국의 府, 州, 縣에 養濟院이 설립됨과 동시에 乾隆황제는 양제원에 대해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허락하였다. 乾隆 6년(1741) 7월 戶部에서 건의하길 “原任浙江巡撫盧焯奏稱: 養濟院向無稽核, 亦無上司責成, 請將現在額內外孤貧, 飭州縣逐一嚴查. 凡不願住院, 與冒濫食糧者, 悉行汰除. 將境內實係老疾無依之人, 照例取結收補. 其餘多者, 準作額外孤貧, 分造二冊, 挨次編甲, 開列花名, 查明年貌疴瘵, 係何項殘疾鰥寡孤獨窮民, 並原住莊園, 食糧年月, 逐一注明. 出具印結, 由府加結, 轉送上司備查. 自後, 凡遇汰革, 病故, 頂補, 新收等項, 隨時報明. 仍於年底另造四柱清冊. 并一年給過口糧柴布銀數, 分送上司查核. 至上司稽查之法, 專令該管道府, 每年遇盤查時, 或踏勘公事, 即攜原送花名年貌冊, 新赴養濟院點驗. 果係房屋完整, 孤貧實在住院, 並無冒濫情弊, 出具印結報明. 如有房屋坍塌, 孤貧不盡住院, 或年貌不符, 冒濫給糧者, 將該管官照違例支給例, 降一級調用. 道府不行查驗, 遽行加結轉詳, 照違例支給轉詳官例, 罰俸一年. 若縱令胥役孤頭等代領, 以致冒領吞蝕等弊, 該管官……照徇庇例, 降三級調用, 應如所請, 從之.”<sup>44)</sup>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비를 통하여 양제원의 질서는 호전되었다. 이 이후 乾隆황제는 三令五申을 통하여 각 양제원에 “廣仁恩於茂育, 遠敷熙皞之

隆, 崇光烈之觀揚, 永慶綏和之治.”<sup>45)</sup>할 것을 독촉하였다. 이로써 청대 구휼사업을 고조시켰다.

乾隆 이후에는 전국 각지의 養濟院의 기능이 점차 마비되어 결국 소멸되었다. 嘉慶시대에는 이러한 방면의 사업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어졌다. 道光 2년(1822) 11월에 “各省民人有孤貧殘疾, 無人養贍者, 該地方官加意撫恤. 如無廬棲處, 該地方官酌設棲流所以便棲處.”<sup>47)</sup>하라고 명하였다. 이 시기에 양제원 등 구휼조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편전쟁 이후 재난과 전염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康熙시대에 粥廠과 太醫을 파견하여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돌본 제도를 본받아 粥廠과 醫局을 설치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직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세워진 것이며 그 범위도 매우 적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와 士紳들 대부분이 부패하여 진정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었다.

#### 4) 군대의약과 구휼사업의 와해

아편전쟁 이전에는 군대에 복무하는 의생은 모두 태의원에서 파견하였다. 康熙 24년(1685)에 흑룡강 摩爾根 지역이 요긴해져 태의원에 명하여 수도에서 우수한 의생 2명을 파견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체시켰다. 강희 45년(1706)에 이를 중지시켰다(『大清會典事例』 권1105 태의원). 의생이 군을 따라 전선에 돌아오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고용하여 대체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군을 따라다니는 의관이 사사로이 의사를 고용하여 대신할 경우 죄를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였다(『大清會典』 권81, 태의원). 군을 따라 다니는 의생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들에게 勞務費를 지급하였다. 乾隆 5년(1740)에 군대를 파견하여 楚輿지방의 苗族을 소탕할 때에 “民役恐生疾病, 于桂林府選募良醫一名隨往, 給

4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79.

4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860.

4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358.

4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732.

4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556.

與辛苦銀 ……”<sup>48)</sup>고 하였다. 이 이외에 장기적으로 변방을 시키는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군사가 지키는 지방에서 병이 들 경우 鎮守官이 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장형 40대로 다스린다. 병으로 죽게 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만약 해당 부서가 의생을 선발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같은 죄로 다스린다. 청대 전기에 정부는 군대 병사의 의료에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뒷일까지도 상당히 중시하였다. 雍正 13년(1735) 11월에 “都統王常奏：八旗病故官兵妻妾，無論有無子嗣，情願守節者，勿許親族佐領勒肯，即行呈報，照例支給一年半俸米半餉，從之”<sup>49)</sup>하게 하였다. 乾隆 원년(1736) 12월에 “賞川省赴黔剿之陣亡病故士兵天格等七十七名，銀兩如例”<sup>50)</sup>하였다. 乾隆 2년(1737) 2월 己酉에 “……擊賊陣亡者 …… 若子弟內有可以訓養成材者，即令頂補，以資養贍，倘子弟無人，眷口無所倚賴，著該管大臣，設法撫恤之，毋令失所”<sup>51)</sup>하게 하였다. 이 이외에 乾隆시기에는 구휼의 표준을 규정하였다. 乾隆 5년(1740) 윤6월에 묘족이 집단으로 모반을 일으키자 戶部의 議調度事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官兵有帶傷陣亡及軍前病故者，例應事竣賞恤 …… 如兵丁陣亡，賞銀五兩。傷重者，一兩。傷輕者，五錢。病故者，三兩。…… 守備以上等官，如有帶傷病故之事，分別資助。千把總傷亡病故者，資助銀二十兩 …… 時值酷暑，病症恐多，更應撥醫調治。病故者買棺書殮。大口，給銀一兩。中口，七錢。小口，四錢。其醫生每月給銀三兩。…… 應請選募良醫二名，日給辛力盤費。但深入軍營，與醫治難民不同，應每名每日給銀二錢”<sup>52)</sup>하였다. 전쟁터에서 사망한 병사에 대한 구휼은 상술한 규정 이외에 또한 병든 병사는 原籍地로 돌려보내

료하도록 하고 연도의 지방정부는 의약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乾隆 13년(1748) 7월에 “復查軍前各省官兵，傷病者多，陸續遣回內地調養 ……”<sup>53)</sup>하게 하였다. 군대 병사의 구휼에 대한 상술한 詔令과 같은 것이 건륭시대에 최소 19차례 내려졌다. 이로써 건륭시대의 군대의약 및 구휼사업이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의약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대 군대의약과 구휼사업은 건륭시대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걸기 시작하였다. 嘉慶 4년(1799) 2월에 “其各處留養傷病滿漢官兵，即應通飭傷查明，各令歸旗回伍，以示體恤而節浮費。”<sup>54)</sup>하도록 하였다. 부상이나 병든 병사는 일정한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모두 부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道光 8년(1828) 11월에 “被傷不能披甲及年老有疾退閒者，俱加賞資。一傷病回營兵丁不能充伍者，該管將弁查明，本家如有子弟至戚可以教練差操，即令丁食名糧，免致失所。”<sup>55)</sup>할 것을 규정하였다. 嘉慶, 道光시기에도 군사를 구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乾隆시기와 비교하면 매우 적었고 또한 규정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며 조치를 관철시키는 힘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군대병사의 의약구휼 사업이 점차 와해되었다.

#### 4. 정책적 요인이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 1) 유행병에 대한 정책이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아편전쟁 이전에 청 정부는 천연두의 예방치료에 대해 비교적 중시하였기 때문에 예방치료의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천연두를 피해 다니던 것에서 적극적으로 人痘, 牛痘접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康熙황제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적극적으로

4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154.

4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87.

5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38.

5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56.

5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117.

5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109.

5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65.

5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宣宗成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757.

痘醫를 찾은 그의 행위와 種痘에 대한 훈시와 황제 및 대신들의 자녀들에게 중두의 시범을 보인 것 등은 정부가 人痘, 牛痘접종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인두, 우두접종법이 잇달아 궁정과 민간에 널리 추진되었다. 청 정부가 천연두의 예방치료를 중시하였고, 천연두 등의 예방치료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청대 초기 의학 분과에서 전문적으로 痘疹科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는 천연두의 전문 인재 양성과 천연두의 효과적인 예방치료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청대의 정부는 천연두의 예방치료에 상당한 작용을 발휘하였지만 다른 역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힘을 쓰지 못하였다. 청대는 瘟疫 유행이 왕조사회 가운데 제일 많이 창궐한 시기였다. 빈번한 유행으로 백성들이 대량으로 사망하였고 따라서 수많은 의가들이 예방과 치료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溫病學이 탄생하여 진단과 치료방법을 풍부하게 하였다.

## 2) 文字獄의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청대 통치자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체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文字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 수단이었다. 文字獄은 청대 문화발전에도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의학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文字獄”이 의학에 미친 영향은 아래 3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 (1) 의학에 대한 “文字獄”의 손상

清朝가 “문자옥”을 자주 일으켜 박해를 당하고 연좌된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고 범위도 놀라울 정도였다. 자유 직업인으로 여겨던 의생조차도 어떤 원인으로 연루되었고 정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의서가 불태워지고 금지되었다. 이는 의학에 대해 큰 손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雍正시대 呂晚村의 獄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만촌은 명말 청초시기 민족사상이 통철한 의가였다. 그는 의술에 정통하고 문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생전에 만주의 사상과 언

론을 배척하였다. 그는 강희 23년(1683)에 죽었다. 여만촌이 죽은 뒤 40여 년 뒤에 靜案에 연루되어 무덤을 파내어 유해를 훼손시켰다. “문자옥”의 연좌로 인하여 여만촌의 저서인 『呂晚村文集』, 『四書講義』 등 50여 종과 의학저작인 『呂氏醫貫』, 『趙氏醫貫評』, 『東莊醫案』 등이 건륭 39년(1774), 건륭 45년(1760), 건륭 46년(1761) 세 차례에 걸쳐 금지시키고 불태워져 거의 절멸되었다. 간혹 남아 있던 것도 금서로 지정되었다. 呂晚村과 같이 만주를 배척하고 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가들은 “문자옥”에 연루되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심문 당하였으며 의서들은 불태워지는 등 의학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 (2) 의학학풍에 대한 “文字獄”의 영향

청대 통치자들이 “문자옥”을 자주 일으키자 ‘考證學’이 성행해졌고 이런 학술풀조는 의학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저명한 의가로는 喻嘉言, 張隱庵, 徐大椿, 尤在涇, 陳修園, 沈金鰲 등이 있었고 이들 모두 고서를 연구하고 문헌을 정리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량의 醫學類書와 叢書가 출현하였다. 類書로는 강희시대에 陳夢雷가 주편한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이 있고, 개인 叢書로는 張鑑의 『張氏醫書』 7종, 徐大椿의 『徐氏醫書』 11종, 沈金鰲의 『沈氏尊生書』 11종, 陳修園의 『南雅堂醫書』 16종 등이 있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의가들이 고전 의적의 정리에 힘썼다. 汪昂의 『素問靈樞經類約注』, 張志聰의 『黃帝內經素問靈樞集注』, 喻嘉言의 『尚論篇』 등이 모두 이 시기에 나온 저작이다.

### (3) 考據學과 遵經復古

“문자옥”이 자주 일어나 고증학이 성행한 것이 사회적인 풍조였다. 考證·訓詁의 성행으로 탄생한 사상의 결과가 復古·保守의 경향이다. 이러한 보수 경향은 의학계에서 경전을 따르고 옛 것을 지키게 하여 대담한 창조정신을 저해시켰다. 청대에 개혁정신을 가진 『醫林改錯』 등이 출현하였고 또한 溫病學派도 탄생하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의학의 발전은 완만하였다. 완만하다는 것은 청대가 지배한 17세



기에서 19세기까지 자연과학이 크게 비약한 시기로 의학도 이 시기에 큰 발전이 있었어야 하지만 “문자옥”으로 야기된 북고사상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이 발전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3) 침구학에 대한 道光 詔諭의 영향

침구학이 발전한 역사는 유구하다. 수당시기에 의학교를 설립하여 정식으로 교육을 시작하였을 때 침구는 이미 독립된 학과로 되어 있었고 당대에는 이미 침박사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각 왕조의 의학 분과에서도 침구는 하나의 과로 독립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침구학의 발전은 명조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청대에 이르러서는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청대 전·중기에 정부는 침구학의 발전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가 없었다.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과 『醫宗金鑑』에는 침구의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 말기 道光 2년(1822)에 조정에서 “침구는 결국 임금을 받드는 바가 아니므로 태의원의 침구과는 영원히 정지시켜야 한다.”<sup>56)</sup>고 공포하였다. 이는 침구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통치자가 봉건 禮教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청대는 건륭 이후부터 정치가 점차 부패해지고 경제가 쇠퇴해져 서방 세력이 날로 청 왕조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무너져 가는 통치 기반을 시키기 위해 청 왕조는 禮教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집권적인 전체통치를 강화하려고 기도하였다. 침구는 육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봉건 예교에 위배되기 때문에 먼저 폐지시켰다. 道光의 조령이 침구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태의원에 침구학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정부가 鍼灸業에 대해 단속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침구가 민간에서 여전히 유행하였지만 이러한 조령의 영향으로 비공개적으로 되어 임상경험의 누적과 기술의 교류 및 제고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으로는 도광 2년에서 청대 말

기까지 89년 동안 저작된 침구의서(52종)는 도광2년 이전 청대 178년 동안 저작된 수량(22종)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 방면으로 가장 주된 원인은 첫째 명대 후기에 『鍼灸大成』과 같은 집대성한 저작이 출현하여 청대 전기와는 시간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둘째 도광 이후는 명대 말기와 시간상으로 200여 년 떨어져 있었으므로 침구경험을 비교적 많이 누적되었다. 태의원에 침구학을 폐지시켰지만 그러나 針灸療法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백성들이 이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발전할 수 있었다. 물론 도광의 조령은 침구학의 발전을 확실히 제한하고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조령이 없었다면 청대 침구학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5. 清代의 醫政에 대한 평가

### 1) 아편전쟁 이전의 의정에 대한 평가

청대 의약정책의 방향은 왕조사회 통치자의 일반적인 의약가치관의 규율에 대체로 부합하였다. 그러나 청대는 중국역사상 마지막 왕조였고 게다가 소수 민족의 정권이었다. 또한 근대 서방자본주의의 심각한 충격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反淸復明과 날로 늘어나는 민주혁신 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왕조에 비해 더욱 전체를 강화하고 부패가 심한 특징이 나타났다. 전체정치, 전체문화의 영향으로 의정관리 체계도 집권적인 특징을 나타내어 의정사상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북고적인 경향이 반영되어 나왔다. 청대 의정은 새로운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방면에 있어서 위축되고 점차 황폐해지게 되었다.

### 2) 아편전쟁 이전 의정이 형성된 원인

청대 의정이 점차 이완되는 국면이 나타난 것은 극단적인 전체와 부패된 정치, 쇠퇴해져가는 경제와 사상문화의 속박 등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중앙집권의 전체 통치는 청나라에 이르러 최고조에 다다랐고 동시에 부패와 몰락의 길로 접어

5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72.

들었다. 통치자들은 국가기관의 운영을 유지하는데 온 정력을 기울려 무너져 가는 통치기반을 지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방면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청대 초기 몇몇 황제는 비교적 영민하고 지혜로워 관대한 정책을 채택하여 민심을 회유코자 의약구출, 유행병의 예방과 치료, 의사의 편수, 邪術을 금지시키는 등 유익한 일을 하였다. 이는 어떤 방면에 있어서 의학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유정책은 청대 초기에 비교적 안정된 정치와 번영된 경제를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嘉慶 이래로 정치경제인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貴州에 苗族의 반란이 일어나고 四川·楚 지방에 白蓮教의 亂이 일어나 5개 省으로 만연되자 군사력을 동원하여 9년 동안 싸워서 겨우 평정하였다. 가경 5년(1800)에 해안 지방에 艇盜의 난이 발생하여 복건, 절강 일대가 혼란에 빠졌다. 18년에는 天震敎의 난이 山東, 直隸 등에서 일어나 심지어 太監과 결탁하여 왕도를 침공하였다. 道光 4년(1824)에 新疆에서 回族 張格爾가 군사를 일으켰다. 30년에는 洪秀全이 廣西에서 군사를 일으켜 청은 멸망의 길로 치달았다. 이와 같이 사회가 어지럽고 정부의 국고가 바닥이 나서 경제의 정체가 가중되어 정부는 의정기구와 의학교육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없었고 의약구출을 널리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청대의 의정은 이때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상술한 정치, 경제적 요인이 의정에 미친 영향 이외에 사상문화 방면의 전체정책도 의정의 형성과 의학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문자옥”을 자주 일으킨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극단적인 전체통치와 아울러 정치경제의 절대적인 집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문화 등 의식형태 영역에도 전면적으로 전체정치를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통치자들에게 불리한 사상과 문화에 대해 하나같이 배척하였다. 둘째 통치자 자신이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排滿復明의 사상이 전파될까 두려웠고 정부의 문화가 철저하게 관철될 수 없을까 염려하였으며 또한 통치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상이 확산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를 빌어 위협하였다.

사상문화 방면에 있어서 의심이 많고 시기하는 일종의 상반된 정책을 실행하였다. 통치자들은 “문자옥”을 자주 일으켜 수많은 文人學士들을 무고하게 탄압하고 친족과 봉당을 무고하게 연좌시키는 등의 결과를 조성한 것 이외에 사상문화 방면에 있어서도 기형적인 발전이 출현하였다. 문인학사들은 위협 아래에서 현실 정치사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학술 연구는 사소한 것에 신중을 기하여 이것도 저것도 이루지 못하고 감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현실 정치사회에 감히 맞서지도 못하고 또한 미래의 사상문화를 개척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경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고대사회로 돌리고, 책과 문자로 전향하여 “문자옥”을 쉽게 발생시키지 않는 학술 영역 안으로 전향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고증과 혼고에 정력을 기울여 고증학이 가장 으뜸인 국면을 형성하였다. 고증학은 자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실사구시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것으로 복고를 진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疑古를 혁명정신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이 정치사회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책의 訓釋과 고찰에 불과하였다. 고증학의 영향으로 강화 연간에 『古今圖書集成』과 『四庫全書』라는 대작이 완성되었다. 이 이외에 이 시기에 『醫宗金鑑』 등 의학저작이 탄생하였다. 이는 의학을 포함하여 典籍의 계승과 정리 및 전파를 어느 정도 추동시켰다. 그러나 번잡한 고증은 사람들의 사상을 속박하여 의학이 발전할 수 없었으며 의정사업도 개혁과 새로움이 부족해져 보수적이고 위축되고 점차 쇠퇴하는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 III. 結 論

논자는 본론의 간단한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阿片戰爭 이전까지 淸代의 醫藥政策, 醫政機構과 制度, 政策的 要因과 醫學發展과의 관계, 醫政에 대한 評價에 관한 윤곽을 아래의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1. 醫藥政策을 요약하면, 첫째 淸朝는 明朝의 신선 무술을 비판하고 邪術을 단속하여 의약의 영향을 확대한 의정전통을 답습하고, 이어서 邪敎와 낡은 풍습을 단속 금지시키는 정책을 견지하여 의학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동시에 邪術을 금지하는 동시에 先醫에 대한 제사를 지내어 의약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는데 이는 의학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둘째 淸朝는 천연두의 예방을 비교적 중시하여 牛痘接種에서 康熙時代는 人痘接種術으로 적극적으로 보급하였기 때문에 천연두의 전염이 淸代에는 대체로 통제가 잘 되었다. 그러나 돌림병의 발생 부분에 있어 아편전쟁 이전까지 淸代는 79차례나 발생하였고, 이 시기의 유행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明代에 비하여 매우 부실하였고 특히 乾隆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느슨해져 백성들의 건강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돌림병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傳染性 및 群體性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와 대중들의 역할을 의지해야 만이 대처할 수 있다.

셋째 淸朝는 醫書의 정리와 대형 類書·叢書의 편찬 작업을 중시하여 『古今圖書集成·醫部全書』이 편찬되었다. 또한 『醫宗金鑑』은 乾隆시기에 의학교과서로 삼은 이후부터 淸末까지 160여 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李梴의 『醫學入門』 등은 의학 보급에 큰 영향을 끼쳤다.

넷째 淸代의 의약형벌과 감옥위생 방면에 있어서 淸代가 宋明을 답습한 관계는 明이 唐·宋을 계승한 것처럼 분명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규정은 옛 규정을 기초로 발전시켰고, 宋·明의 의약형벌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략하다. 淸代의 인삼 채취에 관한 형벌과 감옥 의약인 獄醫 과건, 木籠刑을 금함, 죄인이 병으로 죽으면 獄官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淸朝는 의사를 가장한 절취의 금지, 毒藥酒의 제조판매 금지, 독화살의 금지와 같은 의약과 관련된 금령이 있었고, 이러한 조치들은 의약의 이름을 빌어 사취하고 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에 타격을 주어 의정 질서를 지키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2. 醫政機構와 制度를 요약하면, 첫째 醫政 관리에 있어 아편전쟁 이전 淸代 의정구조는 기본적으로 명대의 옛 제도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조직기구를 간소화하였고 관리는 중앙집권적이었다. 태의원은 의학 행정과 의료의 권력을 함께 장악하여 명대에 두 의정기구가 병존한 폐단을 없앴다. 태자, 황후, 궁비를 전담하는 의료 조직을 없애고 태의원이 궁정의 모든 의료사무를 책임졌다. 王府, 군대, 감옥 등의 의약사무도 통일시켜 태의원에서 의관을 파견하여 처리하였다. 禦藥房은 동서 두 곳에 설치하여 일반적으로 태의원에 예속되었지만 때로는 독립되거나 禮部의 제약을 받았다.

둘째 淸代 의학교육은 대체로 宋明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중앙의학교육에는 전문기구가 없었고 다만 태의원 속에 敎習廳을 설치하여 禦醫 가운데 학식이 깊은 인재를 선발하여 東藥房에서 禦藥房의 太監이 가르쳤으니 이를 內敎習이라 하였다. 지방에도 의학교육을 설치하였지만 역대 규모로 회복되지 못했다. 요컨대 淸代의 의학교육은 대체로 명대의 제도를 답습하였지만 명대의 지방의학교육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었다.

셋째 구휼사업에 있어 淸朝는 棄兒를 거두어 살피는 育嬰堂과 늙고 병들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普濟堂이 있었고, 또한 돌보는 사람이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불구자에 대해 관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養濟院을 설치하였다.

넷째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국력이 더욱 쇠퇴해지고 서방의학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태의원에는 또한 경비가 부족하여 쇠락해져가는 기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의약사업과 마찬가지로 淸代 군대의약과 구휼사업은 건륭시대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걷기 시작하였으니, 의정기구와 제도가 황폐화되고 와해되어졌다.

3. 政策的 要因이 醫學發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淸朝는 천연두의 예방치료에 상당한 작용을 발휘하였지만 다른 역병의 예방치료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여 瘟疫의 창궐로 백성들이 대량으로 사망하

였고, 따라서 수많은 의가들이 예방과 치료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溫病學이 탄생하여 진단과 치료방법을 풍부하게 하였다.

둘째 청대 통치자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체정책을 실행하였는데 “文字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 수단이었다. “문자옥”은 청대 문화발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였고, 의학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문자옥”은 학술 풍조를 ‘考證學’이 성행하게 하여 의학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저명한 의가로는 喻嘉言, 張隱庵, 徐大椿, 尤在涇, 陳修園, 沈金鰲, 汪昂 등이 있었고 이들 모두 고서를 연구하고 문헌을 정리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여 대량의 醫學類書와 叢書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청대의 “문자옥”으로 말미암은 考證·訓詁의 사상적 결과는 復古·保守의 경향을 胚胎하였고 이러한 보수주의적 경향은 창조정신을 저해시켰다. 다만 청대에 개혁정신을 담은 『醫林改錯』 등의 출현과 溫病學 派도 탄생하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의학의 발전은 완만하였다.

셋째 침구학의 발전은 明朝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清末 道光 2년(1822)에 조정에서 태의원외 침구과를 폐지시키게 되었고 이 때문에 침구학 발전에 매우 큰 장애가 되었다. 민간에서 침구학이 여전히 유전되었지만 정부가 이를 제한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었다.

4. 清代 醫政을 評價하자면, 清朝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봉건왕조이며 따라서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측면에서 모두 극단적인 전체정치와 부패된 특징을 드러냈다. 청나라 초기에 몇몇 황제들이 회유정책을 마련하고 勵政圖治를 하여 사회적 모순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으며 각종 사업에도 다소 발전이 있었다. 의정사업에도 새로운 호전되는 기미가 보였다. 예로 통일된 의정체계의 초보적인 형성, 천연두의 효과적인 예방치료, 邪術과 陋俗의 금지와 개혁, 관리의 의서 수정작업의 전개 및 의약구제가 투철해진 것 등이 있다. 그러나 反清復明的 세력들과 급속히 발전한 서방 자본주의의 위협과 충돌은 청나라 통치자들로 하여

금 정치, 경제, 사상문화에도 절대 전체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회의 동란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경제가 침체되고 쇠퇴하자 의정사업도 역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역대 왕조의 의정규모를 회복할 힘이 없었다. 청나라가 처해있었던 시대는 국제과학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였으나 중국의 학은 오히려 청대의 절대전체정치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논자는 中國의 先秦시기부터 清代까지 醫政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선현들의 의정사상과 경험을 탐색함에 있어, 현재까지 연구가 매우 부진한 분야인 태다가 사료도 영성하고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거나 가설과 억측도 불가피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러한 미비점은 사료의 재분석과 새로운 사료의 수집과 인접 분야 연구 결과의 도움을 받아 뒷날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단행본〉

1.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7.
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高宗純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仁宗睿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清實錄·宣宗成皇帝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5. 洪元植, 尹昌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7. 趙爾巽 著. 清史稿.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8. 高宗 編纂. 清朝通典. 臺北. 新興書局. 1965.

〈논문〉

1. 金基郁, 朴炫局, 金正浩. 明代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2. 金基郁, 朴炫局. 遼金元の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3. 金基郁, 朴炫局, 鄭城采. 隋唐五代の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4. 金基郁, 朴炫局, 金在哲. 兩宋時期的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5. 朴炫局, 金基郁, 朴宣柱, 梁峻.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6. 金基郁, 朴炫局, 朴晶禧, 梁峻.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